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총포·화약류 제조 관련 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48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포·화약류 제조 관련 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안 제44조의9 제1항 제4호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8. 13.

다. 회 부 일 : 2025.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유통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기 제작 방법 등의 불법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단지 불법정보로만 규제하는 것은 부족하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총기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포·화약류 제조 관련 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안 제44조의9 제1항 제4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안 제44조의9 제1항)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에서 금지하는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제4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 ----- ----- ----- ----- -----

현행	개정안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에서 금지하는 <u>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u>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최근 사제총기를 사용한 살인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총포·화약류의 설계도나 조립 영상 등을 통해 누구나 사제총기나 폭발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총포화약법상 개인이 총포나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거나 이용할 경우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정

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¹⁾).

○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이하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²⁾³⁾).

○ 그러나, 실제로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사제 총기나 화약류 제조 관련 영상·파일이 유통되는 경우, 해외에서 제작·게시된 자료라는 이유로 국내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스크리닝 조치 또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1)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

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 시정요구 의결 건수는 2021년 744건에서 2022년 5610건, 2023년 1785건, 2024년 2447건이 의결됐고 2025년 상반기에는 409건이 의결되었음.

- 안 제44조의9 제4호는 총포화약법에서 금지하는 총포·화약류 제조에 관한 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제총기나 화약류 관련 위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고 유사한 사건·사고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
- 특히 현행과 같이 총기 및 화약류 관련 정보의 정보통신망 유포·게시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더라도 해외에서 제작·유통되는 자료의 유통을 방지하거나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정보 감시와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은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②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총포·화약류 제조 관련 정보와는 성질이 달라 기존에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안 제44조의9 제1항 제4호에 대한 유통방지 업무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의 유통방지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별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44조의9 제1항 제4호는 총포화약법에서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에

대하여 무엇을 금지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 각호는 다른 법률의 조문까지 명확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통방지 대상이 되는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44조의9 제2항 제4호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제총기 제작정보는 디지털성범죄물과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안 제44조의9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제도와 유사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총기 등 제작정보에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침해나 위협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특별히 별도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총기 관련 정보를 이에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의 특성 및 불법성의 정도의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은 불법촬영물에 비해 수요나 복제 가능성, 신속한 차단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므로 별도

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하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규정한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오는 소위 ‘성착취물’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착취물’과 사회적 파급력, 피해 범위 등에 차이가 있는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같은 법정 의무를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더라도 실제로 어떠한 정보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